

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결과(부적정) 통지서

사업장명			
업종		전화번호	
소재지			
사업주 성명			
심사대상 공사 종류			

이유 및 개선사항:

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」 제45조제3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심사 결과 부적정으로 판정되어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.

년 월 일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○○지역본부(산업안전기술지도원)장

직인

지방노동청(지청)장 귀하

공지사항

이유 및 개선사항에 적을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사용하셔도 됩니다.